

서울중앙지방법원

제 3 - 3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21나65998 구상금청구등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명진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러스

담당변호사 박현화

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10. 10. 선고 2007가단248031 판결

변 론 종 결 2022. 9. 2.

판 결 선 고 2022. 9. 16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20,004,3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07. 7. 2.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. 위 소장 부분이 송달불능되어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.

나.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. 10. 10. 2007가단248031호로 "피고는 원고에게 20,004,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. 9. 1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"는 원고 승소판결(이하 '이 사건 선행판결'이라 한다)을 하였다. 이 사건 선행판결 정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무렵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.

다.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3490호로 소를 제기하였다. 위 소장 부분 또한 송달불능되어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.

라.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7. 5. 10. 이 사건 선행판결과 동일한 주문으로 2017가소 3490호 판결(이하 '이 사건 후행판결'이라 한다)을 선고하였다. 이 사건 후행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무렵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.

마. 원고는 2020. 11. 16.경 이 사건 후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

의정부지방법원 H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, 위 법원은 2020. 11. 17.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.

바. 위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이 사건 후행판결 정본이 첨부되어 있고(갑 제9호증의 4), 이 사건 후행판결 정본에는 피고(B) 주소란에 "최후주소 서울 중랑구 I"이라고 기재되어 있다.

사. 위 강제경매사건에서 피고는 2021. 2. 5. 의정부지방법원 H 강제경매사건 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위 경매기록을 열람·복사하였다(갑 제9호증의 10).

아. 피고는 2021. 3. 9.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.

[인정사실] 갑 제1 내지 10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

직권으로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.

가.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고(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다카28559 판결 참조), 이 경우에 피고로서는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(대법원 1994. 10. 21. 선고 94다27922 판결 참조), 여기에서 '사유가 종료된 때'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,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

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나(대법원 1997. 8. 22. 선고 96다30427 판결 참조),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1999. 2. 9. 선고 98다43533 판결 참조).

나.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이 사건 소장 부분 및 이 사건 선행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,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H 강제경매사건에서 2021. 2. 5. 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위 강제경매사건 기록을 열람·복사한 사실, 위 강제경매사건 기록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확정된 이 사건 후행판결 정본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, 피고는 늦어도 2021. 2. 5.경에는 이 사건 후행판결의 존재 및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.

또한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후행판결의 소장 청구원인에는 '이 사건 선행판결이 2007. 10. 10.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,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후행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'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있는 사실¹⁾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후행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후행판결의 전제사건인 이 사건 선행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,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

1) 이 사건 후행소송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3490호 소장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.

부동산강제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이 사건 선행판결의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. 이 사건 선행판결의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인 2주가 경과된 2021. 2. 20.경에는 이 사건 선행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무렵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, 피고는 그로부터 2주가 경과된 2021. 3. 9.에야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주채광

판사 석준협

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 248031 구상금청구 등 사건에 관하여 2007. 10. 10. 판결선고를 받고 동 판결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금 20,004,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. 09. 1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받아야 하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선의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피고들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원고는 현재까지 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
2. 그러므로 원고는 위 판결정본에 기한 피고에 대한 청구시효가 2017. 10. 10.로 만료되므로 이를 연장하기 위하여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판사 권양희